

부속서 II
이스라엘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이스라엘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특정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언급된 경우, 그리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국내 또는 국제 산업분류코드에 따른, 비합치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관련의무**는 제9.12조(비합치 조치)제3항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제3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 또는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의 조치**는, 명시된 경우, 투명성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의 비한정적 목록을 적시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라는 용어는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년)를 말한다.

5. 기재된 유보항목 제11번과 그 밖의 모든 기재된 유보항목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 장애인, 퇴역 군인 및 이스라엘 전사 장병들의 직계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혜택 및 그 주변 지대 개발을 위한 정책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2.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민영화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현지주재(제10.5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이스라엘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
 - 가. 투자자 또는 투자에 의한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권리
 - 나.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자로서 결과적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능력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할 권리
 - 다. 결과적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또는 특정 임원의 국적 또는 거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또는
 - 라. 결과적 기업의 경영,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할 권리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2. 지정 기업 또는 정부기관으로 한정된 서비스의 공급이 그 지정 기업 또는 정부기관 외의 것에 자유화되거나, 그러한 지정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더 이상 비상업적 기초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이스라엘은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975년 공기업법(특별 국유주식 포함)

2005년 공기업명령[아숏 아슈켈론 인더스트리즈(Ashot Ashkelon Industrie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07년 공기업명령[오일 리파이너리즈(Oil Refinerie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06년 공기업명령[오일 리파이너리 – 아시도드(Oil Refinery – Ashdod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04년 공기업명령[엘-알 이스라엘 항공(El-Al Israel Airline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2016년 공기업명령[IMI 시스템즈(IMI Systems Ltd.)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이스라엘 케미칼(Israel Chemicals Ltd.)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한 특별 국유주식

짐 종합해운서비스(Zim Integrated Shipping Services Ltd.)
에 대한 특별 국유주식

엘-알 이스라엘 항공(El-Al Israel Airlines Ltd.)에 대한 특
별 국유주식

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양허, 면허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이행요건(제9.9조)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양허 및 독점적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 분야: 모든 분야
-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3조)
- 이행요건(제9.9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투자
1. 1998년 「공공기관 보안법」에 정의된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과, 사이버 보안에 책임이 있는 특정 직위에 있는 인은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임이 요구되며 적절한 기밀정보취급허가 보유가 요구된다.
 2.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과 주로 관련이 있고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과 합치하는 경우,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 기준의 조치: 1998년 공공기관 보안법
- 2015년 정부 결정 2443
- 2015년 정부 결정 2444

5.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투자

이스라엘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6. 분야: 방위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9.10조)

최혜국대우(제9.4조)

유보내용: 투자

이스라엘은 방위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2007년 방위수출통제법

2005년 방위회사법

7.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색 및 구출과 해난 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다.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의 공동제작 및 배급

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인정, 또는

마.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기준의 조치:

8. 분야 : 모든 분야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 유보내용 :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공공 독점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송수, 환경서비스, 임업 및 별목 부수 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운송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존재한다.

기준의 조치 :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CPC에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것 외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부속서 11-나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포함된 임원, 관리자, 전문가 및 상용 방문자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2. 분야: 토지 및 부동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국민이 지배하는 회사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권리의 취득은 이스라엘 국토청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기준의 조치: 1960년 이스라엘의 토지법

13.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4. 분야: 보건의료,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보건 기관, 장비, 서비스, 데이터 교환 및 제품,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조산사·간호사·물리치료사·의료보조인력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주택 및 보육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야: 위성방송, 유선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위성방송, 유선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의 면허권자 내 이사회 구성원 및 직위보유자는,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되고, 관련 규제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2. 이스라엘은 망 종단점 사이의 음성, 데이터, 문자열, 소리 및 풀 모션 픽쳐 비디오의 전송을 위한 위성통신시설의 면허에 대하여 그리고 위성 시스템을 통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의 면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준의 조치:

16. 분야: 신원관리, 생체인식 기술, 생체인식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투자

1. 이스라엘은 신원관리, 생체인식 기술과 생체인식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하거나 집행할 권리 를 유보한다.

가.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 제한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 그리고

다. 자국 영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 이전

2. 신원관리 및/또는 생체인식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국민 또는 거주자임이 요구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이스라엘에 설립 되어 이스라엘에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를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준의 조치:

17. 분야: 농업
- 하위분야: 소, 염소 및 양의 낙농업을 포함하는 낙농업
가금류 및 계란
양봉을 포함한 꿀
땅콩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이 농업 분야들의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여 “하위 분야” 요소에 열거된 농업 분야들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기준의 조치:

18. 분야: 인산염 채굴을 포함한 광업, 채석업 및 광업과 채석업의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인산염 채굴을 포함한 광업, 채석업 및 광업과 채석업의 부수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광업 부수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유역의 평가와 관련된 경제적, 과학적 활동
- 광상, 석유 및 가스의 위치와 관련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활동 및 지구과학적 자료수집
- 유정 시추 및 시험
- 지진 또는 그 밖의 영상기법을 통한 수역, 토지구역 및 전이 구역에 대한 지도제작
-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해석
- 저류층 시뮬레이션
- 위험분석
- 매장량 측정
- 컴퓨터 모델링을 포함한 자료 관리 및 분석
- 개념공학
- 자원 및 시설 설명

-심사

-부지 조성 및 측량

-타당성 및 감정

기존의 조치: 광업법령

19. 분야: 에너지, 가스, 석유 및 전기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에너지, 가스, 석유 및 전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20. 분야: 에너지
- 하위분야: 천연가스를 포함한 가스
- 석유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이스라엘은 천연가스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석유 분야의 필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이스라엘은 1952년 「석유법」에 정의된 대로 석유권 보유자에게 국내 소비 및 사용 용도로 특정 양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이스라엘은 석유 종류 및 정유공장에 대하여, 그리고 원유 또는 정제유 및 석유제품을 포함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또는 이행요건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이스라엘은 액체 또는 가스의 저장 및 액체(석유 또는 액화가스) 또는 가스의 대용량저장서비스, 그리고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생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21. 분야: 에너지
- 하위분야: 액화석유가스(LPG)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가스 공급자, 가스 대리점 또는 가스 기술자/엔지니어 면허를 신청하는 자연인의 경우 이스라엘 국적 및 거주가 요구된다.
 2. LPG 면허가 있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된다.
 3. LPG 면허가 있는 기업의 외국인 소유는 제한될 수 있다.
 4. 외국인 LPG 기술자는 한시적 면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이스라엘은 LPG 마케팅 및 수출에 대하여 이행요건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준의 조치: 1989년 가스법(안전 및 면허)
2002년 천연가스 분야 법

22. 분야: 에너지
- 하위분야: 전기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1996년 「전기시장법」에 정의된 대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서비스 공급자로서 면허권자는 다음 조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
- 가. 면허권자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 나. 이스라엘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면허권자에 대한 지배 수단의 최대 비율은 국가기반시설부장관의 결정 대상이다. 그리고
- 다. 면허권자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된다.
2. 전기 송전, 배전, 공급 또는 생산 면허가 있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은, 일부의 경우 기밀정보취급허가를 보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이스라엘 국민임이 요구된다.

3. 전기 송전, 배전, 공급 또는 생산 면허가 있는 기업의 외국인 소유는 제한될 수 있다.

4. 자연인의 전기 송전, 배전, 공급 또는 생산을 위한 면허교부에 대하여 이스라엘 국적이 요구된다.

5. 전기 판매를 위한 면허권자에 대한 외국 은행의 보증 승인은 이스라엘 전력청의 검토대상이다.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 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준의 조치: 1996년 전기시장법
이스라엘 전력청 표준서

23. 분야: 사업 서비스
- 하위분야: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 산업분류: CPC 881의 일부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현지주재(제10.5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기준의 조치:

24.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인력 소개 및 공급

산업분류: CPC 87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인력 소개 및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25.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30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조사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의 이스라엘 유보목록 유보항목 10번의 약속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기준의 조치:

26. 분야: 사업 서비스
- 하위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 산업분류: CPC 831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현지주재(제10.5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사무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임대/리스를 제외하고,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기준의 조치:

27.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76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규제 인식 목적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가 이스라엘에 설립된 승인된 실험실에 의하여 공급된다는 요건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1953년 표준법(제12조)

28.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하고, 감정 평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29.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운전면허시험 감독관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운전면허시험 감독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0.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신용보고 서비스

추심대행 서비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901, 87902 및 87909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신용보고 서비스, 추심대행 서비스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산업분류: CPC 7511 및 751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주소지가 적힌 물품당 500그램 미만의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3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에 정의된 대로 필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하여 특정 보호장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보호장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면허권자에 대한 지배, 지배 수단 또는 면허권자 내 직위보유자 선임 능력
	나. 경영, 주 영업활동 및 사업 중심지의 소재지, 그리고
	다. 이사회 구성원, 직위보유자 및 특정 임원
	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직위보유자”는 1999년 「회사법」 제1조에 정의된 대로 사장, 최고사업책임자, 부사장, 사장대리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밖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장은 최고경영자와 동등한 직위로 양해된다.

기준의 조치: 1975년 공기업법

1982년 커뮤니케이션법(통신 및 방송)

1997년 전기통신 명령[이스라엘 통신회사 “베제크(Bezeq)”
가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의 결정]

3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홍보 및 광고 서비스

산업분류: CPC 9611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스라엘은 홍보 및 광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34.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9613 및 7524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35. 분야: 건설 및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최혜국 대우(제 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건설 및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36. 분야: 유통 서비스
- 산업분류: CPC 62112, 62113, 62117, 62226, 62228, 6225, 6227, 63107, 63108, 6321 및 63299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현지주재(제10.5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다음의 유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주류, 담배 제품, 연료,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위탁 중개인 서비스
 -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농산물을 제외한 중간재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재활용용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과 재료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식품 소매 서비스
 -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비식품 소매 서비스
 - 비식품 전문 소매 판매의 소매 판매

기준의 조치:

37. 분야: 교육 서비스
- 산업분류: CPC 921, 922, 924, 그리고 923의 일부와 929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다음을 제외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자동차, 버스, 트럭 및 오토바이 운전 지도
 -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입학시험 준비 과정 및 어학 교습,
 - 그리고
 - 고등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무역
- 기준의 조치:

38. 분야: 폐기물 처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유해 폐기물의 처리 및 국내처리용량의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39. 분야: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여행 알선 및 대행

산업분류: CPC 7471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스라엘은 여행 알선 및 대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40. 분야: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광객 안내 서비스

산업분류: CPC 7472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스라엘은 관광객 안내 서비스에 대
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41.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해상운송 서비스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현지주재(제10.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1. 이스라엘은 연안운송 및 근해 해상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연안운송이란 선박이 수행하는 상업적 활동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2005년 「연안해상운송법」(외국 선박에 대한 허가)에 정의된 대로,

가. 선박 소유자들이 화물 운송을 위하여 소유/임차한 빙 컨테이너를 재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국제항을 방문하지 않고 그 출발점과 도착점이 연안, 내수 또는 해상지역에 위치한 항구, 선박, 설비 또는 시설인 화물과 여객의 운송, 또는

나. 연안이나 내수 또는 해상지역에서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

기준의 조치: 2005년 연안운송법(외국 해양선박에 대한 허가)
2012년 연안운송법령(외국 해양선박에 대한 허가) (허가요청)

42.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정의된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와 컴퓨터 예약 시스템을 제외하고, 항공운송 서비스 및 공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43. 분야:	운송
하위분야:	공항 및 항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p>이스라엘은, 항만에서 공급되거나 운영되는 건설 및 서비스, 그리고 2004년 「해운항만청법」에 정의된 대로 항만 개발 및 자산회사, 항만회사 및 승인된 회사를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의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항 및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2004년 해운항만청법
	1971년 항만법령
	2012년 해운 및 항만에 관한 명령 [에일랏(Eilat) 항만회사에 대한 필수 국유지분에 대한 발표]
	1977년 공항청법

44. 분야: 우주운송 서비스, 우주선의 임대 및 우주운송 보조 서비스

산업분류: CPC 734의 일부 및 CPC 733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우주운송 서비스, 우주선의 임대 및 우주운송 보조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45. 분야: 운송
- 하위분야: 철도운송 서비스
- 산업분류: CPC 711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현지주재(제10.5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철도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기준의 조치:

46. 분야: 운송
- 하위분야: 도로운송 서비스
- 산업분류: CPC 7121, 7122, 7123, 7124, 6112, 8867 및 744
-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 유보내용: 현지주재(제10.5조)
- 국경 간 서비스 무역
1. 시장접근의 경우, 이스라엘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현지주재의 경우, 이스라엘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대표사무소 또는 모든 형태의 기업의 설립 또는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투자

이스라엘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47. 분야: 운송
- 하위분야: 도로운송 및 그 밖의 정기여객운송 지원 서비스
- 산업분류: CPC 744 및 7121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 이행요건(제9.9조)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이스라엘은 주차 서비스와 상업용 도로 차량의 정비 및 소규모 수리 서비스를 제외하고, 도로운송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8. 분야: 원유 및 정제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

산업분류: CPC 7131 및 713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이스라엘은 원유 및 정제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석유 종류와 정유공장 및 석유와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49. 분야: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742, 748, 74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투자

이스라엘은 관세사를 제외하고, 저장 및 창고 서비스, 화물운송대행서비스 및 그 밖의 지원 및 부수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50. 분야: 공동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하위분야: 회원제 조직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피고용인을 둔 개인 가구

역외 조직 및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분류: CPC 95, 97, 98, 99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회원제 조직 서비스, 피고용인을 둔 개인 가구, 역외 조직 및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